

# 2025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 I 채용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채 예정인원	비고
합계					23명	
2025년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녹지	산림자원	2명	
			해양수산	선박기관	3명	
			시설	일반토목	10명	
				건축	5명	
			방재안전	방재안전	3명	

## II 시험방법 및 일정

### 1.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예정 인원의 1.5배 범위 내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

※ 시험문제 : 비공개(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직급.직렬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9급	녹 지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60분
	해양수산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시 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	방재안전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인성 검사				30분

※ 시험장 입실시간 및 시험 시작시간 등 필기시험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2.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5. 7. 1. (화)	'25. 7. 14.(월) ~ '24. 7. 17.(목) / 4일간	필 기	'25.7.21.(월)	'25.7.26.(토)	'25.7.28.(월)
		면 접	'25.7.28.(월)	'25.7.30.(수)	'25.8.1.(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http://www.jindo.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면허증 등) ※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시행일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2년)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해양수산	선박기관	5급 기관사 이상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2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2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2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기능사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라. 응시결격사유 등

※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공직선거법 제266조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 정치자금법 제57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 병역법 제76조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⑤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치료감호법 제47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4.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540-3291)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 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위의 '가' 항과 '나' 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14.(월) ~ 2025. 7. 17.(목) / 4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jindo.plusrecruit.co.kr](http://jindo.plusrecruit.co.kr)

※ [접수사이트](http://jindo.plusrecruit.co.kr)는 접수 기간에만 접속 가능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는 접수사이트 안내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만료 시(2025. 7. 17.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서류 전형 불합격 시 환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증빙서류 첨부](#)

라. 응시원서 교부 :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마. 제출서류

<b>1. 응시원서 1부</b> - 사진파일(JPG)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이어야 함	접수 사이트 작성
<b>2. 이력서 1부</b>	
<b>3. 자기소개서 1부</b>	
<b>4.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b>	접수 사이트 업로드
<b>5.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b>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포함 발급	
<b>6.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1)</b>	
<b>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b>	
<b>8.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1부(붙임3)</b>	
<b>9. 경력증명서 1부(기능사 자격증 제출자만 해당)</b>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및 근무회사 경력증명서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b>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b> - 취업지원대상자(등록증), 의사상자(등록증)	

##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사.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학업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 카.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타.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40-3222)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직렬 응시자로서, 학위 · 경력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      .      .

서    명 : 정자로 서명(예 홍길동)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도군청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적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 관련 업무 처리 - 사전 결격사유 유무 조회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진도군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